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230 발의연월일: 2022. 12. 29.

발 의 자: 안병길·최춘식·김희곤

윤상현 • 황보승희 • 박대수

김선교 • 이헌승 • 유의동

윤재옥 • 이종배 • 백종헌

구자근 • 이주환 • 정동만

의원(15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2종 항만배후단지는 2012년 기존 물류부지 위주의 항만배후단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거·비즈니스 등 경쟁력을 갖춘 복합도시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도입되었음.

그런데 최근 조성이 완료되기 시작한 2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하여 현행법에 따른 임대 및 양도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어 투자유치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상 항만시설의 정의규정에서는 해당 기능의 대표적인 개별시설을 나열하고 있는데, 관리청에서는 이를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항만시설 외의 시설의 입지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종 항만배후단지 상부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양도제한

등의 적용을 배제하여 2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항 만시설을 탄력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하여 보다 폭넓은 시설을 항만 에 입지하게 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항만시설의 범위에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시설을 포함함(안 제2조제5호바목 및 제4조 제1항제1호 신설).
- 나. 항만시설과 관련한 신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기술을 적용하는 항만개발사업 업무담당자의 손실에 대한 면책근거를 마련함(안제37조제3항 신설).
- 다.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함(안 제57조제1항).
- 라. 처분이 제한되는 1종 항만배후단지 토지의 범위를 국가 또는 시· 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로 명확히 규정함 (안 제74조제1항).
- 마. 비관리청이 2종 항만배후단지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항만개발사업 허가, 실시계획 승인 및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등의 절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 (안 제78조의2 신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시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사항 제3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거쳐 항만시설과 관련된 신기술을 적용하는 항만개발사업의 관리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업무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해당 신기술의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7조제1항 중 "20년"을 "30년"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제6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에 귀 속되지 아니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로 한다. 제5장제3절에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2종 항만배후단지 내 시설에 대한 적용 특례) 비관리청이 2 종 항만배후단지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 제10조 및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57 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한 국유 재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	5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이 항만구역 밖	
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	
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시	
설로 한정한다.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u><신 설></u>	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
	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
	<u>이 지정·고시하는 시설</u>
6. ~ 15. (생 략)	6. ~ 15. (현행과 같음)
제4조(중앙항만정책심의회 등) ①	제4조(중앙항만정책심의회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	
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u><신 설></u>	1.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사항
<u>1.</u> ~ <u>9.</u> (생 략)	<u>2.</u> ∼ <u>10.</u> (현행 제1호부터 제9

② ~ ④ (생 략) 제37조(신기술의 활용) ① · ② | 제37조(신기술의 활용) ① · ② (생략) <신 설>

제57조(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제57조(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항만 배후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 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에게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국 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 법」 제35조 및 제46조에도 불 구하고 20년의 범위에서 사용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호까지와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거쳐 항만시설과 관련된 신기술을 적용하는 항만개발사업의 관리 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 계 등 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 니하면 해당 신기술의 적용으 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 니한다.

에 관한 특례) ① ----------30년-----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4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74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한) ① 1종 항만배후단지에 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 유의 토지(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 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를 포함한다)를 분양받은 입주기 업체 또는 제2항에 따라 토지 를 양수한 자는 제7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사업시설 조성계 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 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 받거나 양수한 토지를 처분하 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 도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설>

제한) ① <u>제60조에 따라 국가</u>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아니
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세78조의2(2종 항만배후단지 내

제78조의2(2종 항만배후단지 내 시설에 대한 적용 특례) 비관 리청이 2종 항만배후단지에 시 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시설 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 제10조 및 제41조의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